

‘코로나 혈세’ 빼먹은 암체업주들 딱 걸렸다

가짜 직원 만들어 휴직 처리...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기승 광주경찰, 알선 대가 돈 챙긴 브로커 2명 구속 등 16명 적발 정부 지원금 매년 증가세 속 세금 줄줄 새...춤추는 감시 필요

가짜 직원을 만들어 휴직 처리한 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챙기는 업체들과 이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들이 광주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노린 브로커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정작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업체 관계자 등 14명과 브로커 2명 등 16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정책자금인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두리누리 사업자금 ▲청년디지털 보조금 등 3억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혐의다.

경찰은 특히 불법 수급을 노린 허위 신청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노리고 다양한 국가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을 비롯, 다른 업체들에게 이같은 부정수급 방법을 알려주거나 가짜 직원을 소개해 주고 알선비나 수수료 명목의 돈까지 받아 챙긴 브로커 2명도 불잡아 구속했다.

이들은 노동청의 단속 사각지대 등을 감안,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1달 가량 4대 보험금을 내고 휴직처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자금을 가로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던 광주노동청 부정수급 수사관의 수사 의뢰로 이들을 검거했다.

광주노동청 부정수급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단일한 정부 자금의 부정 수급을 노리는 통상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정부의 여러 정책지원금을 광범위하게 받아 챙기려고 시도한 게 특징”이

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브로커까지 기승을 부릴 정도로 부정수급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지원금의 지급·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급액은 126억

3700만원에 달했다. 지난 한 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건수가 2018년 2만 2383건(광주 1만1833건·전남 1만550건)→2019년 3만252건(광주 1만 5001건·전남 1만5251건)→2020년 3만9823건(광주 2만 650건·전남 1만917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지급건수도 2만7682건(광주 1만4090건·전남 1만3592건)에 달했다.

지급액도 2018년 59억여원(광주 25억여원·전남 34억여원)→2019년 93억여원(40억여원·53억여원)→2020년 189억여원(101억여원·88억여원)으로 증가했다.

지급신청이 늘어난 만큼 부정수급액도 늘어나

지난 2019년 8억원에 불과했던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93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넘어섰다. 현장에서 계도하고 적발해야 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광주·전남에서도 총 15명(광주 7명, 여수 3명, 목포 2명)이 전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형편이다.

임 의원은 “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추석 온정 나눠요 9일 광주시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석을 앞두고 김중설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부녀회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생필품 꾸러미를 포장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GGM 안전책임자 안전사고 사죄 검찰, 관련자 징역·벌금형 구형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지난해 8월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검찰은 해당 책임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오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GGM 공장 신축 현장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 4개월, 벌금 200만원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광주시 광산구 GGM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일용직 근로자(여·63)가 사다리차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해당 장비를 갖춘 차량이 후진하던 중 지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를 친 것을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가 근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일부 업체 관계자 등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맡았던 역할 등을 들어 책임을 묻는 게 가혹하거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를 다루는 일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재판의 한 차례 더 진행된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내연녀 집서 불륜 저질렀다면? 대법원 ‘주거침입죄 처벌 안돼’

내연남이 유부녀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불륜녀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 아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의 집에 3차례 들어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받아들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공동거주자인 B씨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B씨 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의 이런 평온 상태가 깨져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단순히 B씨가 A씨의 출입을 반대할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이전 판례들을 모두 변경했다. 부재 중인 다른 공동주거자가 반대할 것이라는 ‘추정’으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판례가 변경된 것은 37년 만이다. /연합뉴스

“부모님께 아이들 맡기고 군대 가라고요?”

“병무청 생계 곤란 병역 감면처분 거부 위법”... 20대 가장 승소

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병역감면’이 절실했다.

A씨는 입영을 수 차례 연기했다가 병무청에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 감면원’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따로 살고 있는 A씨 부모 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병역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게 병무청 입장이었다. 공무원인 아버지와 별도 수입이 있는 어머니 등 A씨 부모, 누나 등의 지원이 가능해 사실상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채승원)는 “병무청은 A씨에 대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본가 부모, 형제 및 조모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과 A씨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이 병역감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문화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어린 나이에 결혼, 출산하면서 세대를 분리해 7년 이상 따로 가족을 이루고 생활한 점, A씨 수입·대출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점, A씨 부모가 보낸 손자 생일축하금 등을 제외하면 최근 부모, 형제, 조모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 세 자녀 등을 기준으로 한 수입·재산도 병역감면 기준에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협의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협의

중개환영. 010-3605-5000

남구 덕남동 임야

- ▶ 661㎡(구. 200형), 지분 매매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개발 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매 - 6,000만원
- 문의. 010-3605-5000